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민식 (국가보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고령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의 대부 지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, 의료지원 관련 조문을 국가유공자법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참전유공자 대부지원 신설(안 제12조의4 신설)

- 참전유공자에게 대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와 대부재원 및 대부종류, 대부의 신청 방법 등 규정

3. 주요토의과제

없　　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　　략

나. 예산조치 : '24년 중기사업계획 및 본예산에 반영 예정

다. 합　　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　　타 : 1) 신・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법률 제 호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”을 “국가의”로, “같다)”를 “같다)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4(대부지원) ① 국가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에 따른 대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게 장기저리(長期低利)로 대부를 한다.

② 대부의 재원은 「보훈기금법」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·제대군인 지원자금으로 한다.

③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주택구입대부
2. 생활안정대부

④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대부를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참전유공자가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1조에 따른 대부 지원 대상에도 해당하면 이미 대부받은 금액을 전부 상환한 후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.

⑤ 참전유공자 대부의 한도액, 대부금의 이율, 대부 결정기준 마련, 대부금의 상환기간, 보조금의 지급, 담보, 상계, 채무의 인수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50조, 제51조, 제52조제2항, 제53조, 제55조, 제56조 및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대부 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, 보훈급여금은 참전명예수당 및 생계지원금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7항 중 “제47조 또는”을 “제47조,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4 또는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의료지원) 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의료기관(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(減免)하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	제7조(의료지원) ① ---------- 국가의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같다)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.
<신 설>	제12조의4(대부지원) ① 국가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에 따른 대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게 장기저리(長期低利)로 대부를 한다. ② 대부의 재원은 「보훈기금법」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·제대군인지원자금으로 한다. ③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호

	와 같다. 1. 주택구입대부 2. 생활안정대부 ④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대부를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참전유공자가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1조에 따른 대부 지원 대상에도 해당하면 이미 대부받은 금액을 전부 상환한 후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. ⑤ 참전유공자 대부의 한도액, 대부금의 이율, 대부 결정기준 마련, 대부금의 상환기간, 보조금의 지급, 담보, 상계, 채무의 인수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50조, 제51조, 제52조 제2항, 제53조, 제55조, 제56조 및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대부 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, 보훈급여금은 참전명예수당 및 생계지원금으로 본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660